

봉함엽서	
보내는사람 ○○경찰서장 주소 (담당 ○○○, ☎ -) □□□□□	(요금후납) 받는 사람 □□□□□
귀하	

접는선

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

대상자 :

주 소 :

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.

- 아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% 감경되고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.
-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범칙금 절차로 전환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,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의 소유자(관리자)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의견제출 및 납부기한	 (30일간)
위반 운전자 확인	범칙금 : 원 (벌점 : 점)
위반 운전자 미확인	과태료 : 원 ※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원

-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·지구대(파출소)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www.efine.go.kr)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 경찰서장 (관인)

자르는 선

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(납부자용)

소 관	세입징수관	관서계좌
과태료고지번호		
납 부 자	위반차량	
주 소		
사전 납부	기한	년 월 일까지
	금액	원
납부가상계좌	※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	

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(영수함니다.)

년 월 일
은행(우체국)지점(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) 수납인 경찰서장 취급자인

※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·지점(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)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·지점이며,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※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, 금융결제원(<http://www.giro.or.kr>)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납부기한 내)
※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- 주) 1.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위반사실통지 부분의 과태료 20%감경 적용액과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과태료('※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원' 문구)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2. 음영부분은 옅은 청색으로 하고,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.
3. 시·도경찰청장,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과태료 사전수납의뢰서(수납은행용)

소 관	관	항	목	세입징수관	관서계좌
과태료고지번호					
납 부 자					
주 소					
사전 납부	기한	년 월 일까지			
	금액	원			
회 계					

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 ○○경찰서장

은행(우체국) 지점 (수납인)

인

(뒷면)

-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감경 :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 - 1. 과태료의 20% 감경 : 20km/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39)에만 적용되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20%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.
 - 2. 과태료의 50% 감경 :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,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20%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- 마. 미성년자(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,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)
- 「도로교통법」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..... 접는선

- 앞면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지로사이트(<http://www.giro.or.kr>), 금융기관,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범칙금·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(<http://www.efine.go.kr>)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..... 자르는 선

.....